

제6장 사적연금 적립금 추이전망

오진호

제1절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1988년에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였고, 1994년에 개인연금제도, 2005년에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1층의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설계하였으며, 2층의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사외적립으로 운용이 되므로 회사가 도산하더라도 지급보장을 해줄 수 있게 되었으며, 3층의 개인연금은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소득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설계되었다. 이 세 가지를 운용주체를 기준으로 공적연금(국민연금)과 사적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구분한다.

국민연금은 재정안정화를 위해 1998년말 소득대체율을 70%에서 60%로 낮추는 재정안정 조치를 단행한 이후 2007년에는 점진적으로 낮춰 2028년까지 40%로 낮추기로 하였다. 주택연금은 지난 2012년 2월 1일부터 월지급금을 산정하는 주요변수를 조정¹⁾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월지급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은퇴자산에서 공적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데, 앞으로 비중이 큰 공적부분의 급여수준의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생 100세 시대 국민들의 행복하고 여유로운 은퇴 후를 위해서는 사적(민간)부분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1) 장기 주택가격상승률은 현행 연 3.5%에서 3.3%로, 연금산정이자율은 현행 연 7.12%에서 6.33%, 생명표는 2005년 국민생명표에서 2010년 국민생명표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 들어섰으며, 통계청의 '2012년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1.8%이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적 변화에 따라 과거와는 다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후은퇴자산 확보차원에서 사적연금이 중요해진 만큼 적립금의 추이와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한다. OECD 발표자료²⁾에 따르면 34개 OECD 가맹국 가운데 공적 부분의 비중이 더 큰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 프랑스, 일본, 스웨덴 5개국에 불과하며, 연금선진국들은 사적연금으로 연금시장의 성장에 무게의 축이 이동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사적연금시장 규모가 현저히 작고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의 역사가 20년이 채 안되어 사적연금의 성장이 필요한 시점인 동시에 정확한 연금시장의 예측과 이에 따른 연금정책이 필요하다. 사적연금의 중장기 전망을 통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개발 및 전략수립에서 국고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중요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은 금융감독원의 적립금 운용 구성을 기준으로 각각의 상황을 세밀히 살펴본 후 관련변수를 규명한 것과 동시에 개정 근퇴법과 베이비부머의 쉐몰은퇴, 세계 혜택 등의 효과를 반영한다. 다음으로 개인연금은 가입, 보유 및 월평균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규명한 후, 이들 영향변수들 중 공식통계, 국가 통계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을 선별하여 개인연금 적립금을 추정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절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 추정 프로세스와 향후 전망을 소개할 것이며 3절에서는 개인연금에 대한 선행논문 소개와 이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과 월평균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고, 이들 변수들을 활용하여 계량화와 모델링을 통해 개인연금 적립금을 추정할 것이다. 4절에서는 우리나라 사적연금의 본 역할을 위한 개선과 시사점을 기술한다.

제2절 퇴직연금 향후 전망

퇴직연금은 평안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2005년 12월에 도입된 이후 눈부신 성장을 거듭한 끝에 2013년 6월 현재 약 71조원이며 가입자수는 460만명³⁾에 이른다. 사업장 규모별 도입현황을 살펴보면 500인 이상 대기업은 93.6%가 가까운 도입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100인 이상 기업은 55% 이상의 도입율을 나타내고 있다.

2)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 in OECD and G20 Countries」.

3) 2011년 고용노동부 사업체 노동실태현황의 전체 상용근로자 1,016만명 중 45.0%에 해당된다.



〈표 6-1〉 퇴직연금 적립금 증가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07년 3월	2008년 3월	2009년 3월	2010년 3월	2011년 3월	2012년 3월	2013년 3월	2013년 6월
전체적립금	9,317	32,151	72,346	163,612	317,890	518,072	686,123	704,526
확정급여형 (DB형)	6,027	21,135	48,710	111,308	227,603	383,931	495,240	502,124
확정기여형 (DC형)	2,688	8,715	18,252	33,072	57,325	87,555	130,082	139,023
개인퇴직연금 (IRA(IRP))	602	2,301	5,384	19,232	32,962	46,586	60,801	63,379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통계(pension.fss.or.kr) 인용 저자 재작성

퇴직연금 적립금 추정과 향후 전망을 위해 지난 7년간의 적립금 추이를 기초로 퇴직연금에 대한 기존연구,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 공시통계, 통계청의 각종 통계자료, 서베이 결과⁴⁾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감독원에서 제공되는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의 적립금 구성통계를 참고한다.

구성통계에 따르면 퇴직연금 적립금은 정기납입분, 제도전환분, 추가부담분, 급여지급분, 적립금 운용손익의 역학관계로 추산된다. 이들 구성요소의 정기납입분, 제도전환분, 추가부담분, 운용손익분은 적립금 규모와 정(+)의 관계를 가지며, 급여지급분⁵⁾은 부(-)의 관계를 가진다. 즉, 적립금 추정은 정기납입분, 제도전환분, 추가부담분, 운용손익분의 합을 구하고 이 금액에 급여지급분을 차감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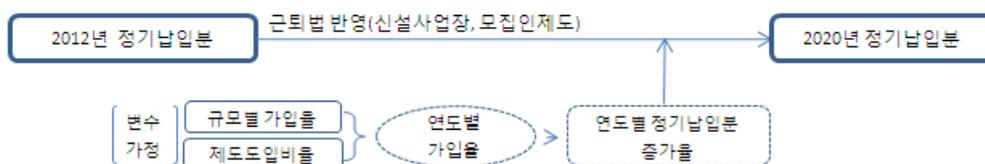
첫째, 정기납입분은 먼저 임금상승률과 가입률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전망치를 도출한다. 임금상승률은 고용노동부의 협약임금상승률 통계를 기준으로 하며, 이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임금상승률은 평균 4.8%로 나타나 향후 이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퇴직연금 가입률은 기업규모별로 차이가 있음을 감안해 29인 이하, 30~299인 이하, 300인 이상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여 추정한다. 또한, 개정근로법의 핵심 사항인 신설사업장 자동가입 규정, 모집인 제도 허용 등은 중소기업장에 퇴직연금이 확산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4)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0), 「기업의 퇴직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서베이 보고서 No 3,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2011년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서베이 보고서 No 4.

5) 금융감독원의 퇴직연금 공시통계에 따르면 정기납입분은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부담금 누계액, 제도전환분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전환된 사내퇴직적립금, 퇴직보험(신탁)적립금 누계액, 추가부담분은 확정기여형, 개인퇴직연금 기업형, 개인형 가입자가 추가로 납부한 부담금, 급여지급분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된 누계금액 및 사용자에게 몰수 반환된 누계금액으로 각각 정의한다.

29인 이하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현재 15~20%로 추정되는데, 개정근퇴법의 시행으로 2020년에는 가입률이 약 50%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30~299인 이하 기업의 가입률은 30~35%로 추정되는데, 추세를 감안할 때 2020년에는 약 55%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300인 이상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45~50% 사이로 추정되는데 2020년에는 약 70%까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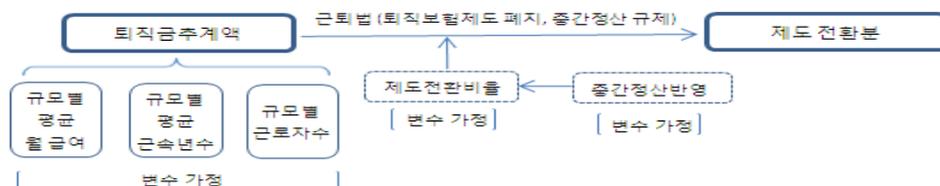


[그림 6-1] 정기납입분 산출도

2017년 이후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은 개정근퇴법에 따라 29인 이하 기업의 IRP가입률에 상용근로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중을 곱하여 산출한다. 이는 자영업자는 사업 특성상 소규모 기업의 운영형태와 비슷하고 IRP 가입만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29인 이하 기업의 IRP 가입률을 참고하여 산출한다⁶⁾.

둘째, 제도전환분은 퇴직연금 추계액에 제도전환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2013년 현재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비율이 20%로 추정되며, 이 비율은 퇴직금 중간정산 제약 등을 감안할 때 2020년에는 약 60%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전환분의 제도 종류별 비중은 금융감독원의 적립금 공시통계와 서베이 결과 등을 토대로 75%는 DB형, 15%는 DC형, 10%는 IRP에 편입하여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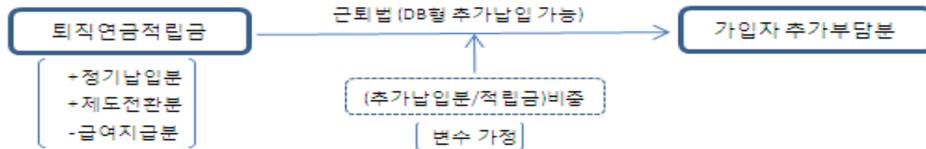
[그림 6-2] 제도전환분 산출도

6) 자영업자의 퇴직연금 정기납입분은 ‘(자영업자/상용근로자)×IRP가입률×29인 이하 기업의 IRP 적립금’으로 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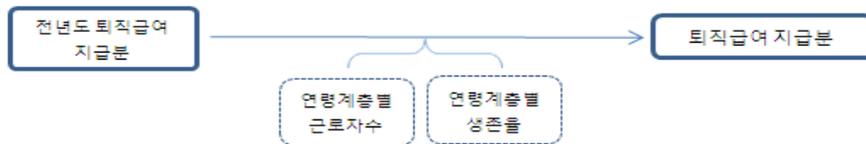
셋째, 가입자 추가부담분은 현재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고 있는 추가부담분의 비중과 DB형 가입자에게도 추가납입 기회가 제공된 개정근퇴법을 감안해서 추정한다. 2013년 현재 전체 적립금에서 차지하는 추가부담분의 비중은 1.7~1.8% 수준에 불과하나, 개정근퇴법과 세제혜택 등의 영향을 고려하면 2020년에는 2.5%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운용손익분은 제도유형별로 DB형은 4%, DC형과 IRP는 5%의 수익률을 가정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이는 제도 도입 이후 5년간의 금융감독원 퇴직연금 공시통계를 토대로 적립금의 수익률을 산출하면 연평균 5.2%이며 제도유형별로는 DB형은 4.7%, DC형은 6.9%, IRP는 5.7%로 계산되었다.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시간으로 유지될 것과, DB형의 경우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사업자의 고금리상품 과당경쟁을 규제하는 차원에서 제시한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 금리가 4~5%를 감안하여 4%, 5%를 각각 간주하였다.



[그림 6-3] 가입자 추가부담분 산출도

마지막으로 급여지급분은 과거 6년간의 공시통계와 베이비붐 세대의 썰물은퇴, 개정근퇴법을 반영하여 산출한다. 2013년 2월 기준으로 전체 적립금 대비 급여지급분은 40.8%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비율은 베이비붐 세대의 썰물은퇴로 증가할 가능성도 있지만 개정근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직 시 IRP자동이전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쇄되거나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



[그림 6-4] 급여지급분 산출도

이외에도 2016년까지 100%로 상향 조정되는 DB형의 사외적립비율은 특히 DB형의 적립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DB형 적립금의 구성요소인 정기납입분, 제도전환분, 추가부담분, 급여지급분 등에 사외적립비율 상승분을 반영해 산출하였다.

이러한 추정프로세스를 통하여 도출한 퇴직연금 적립금의 중장기 전망치는 <표 6-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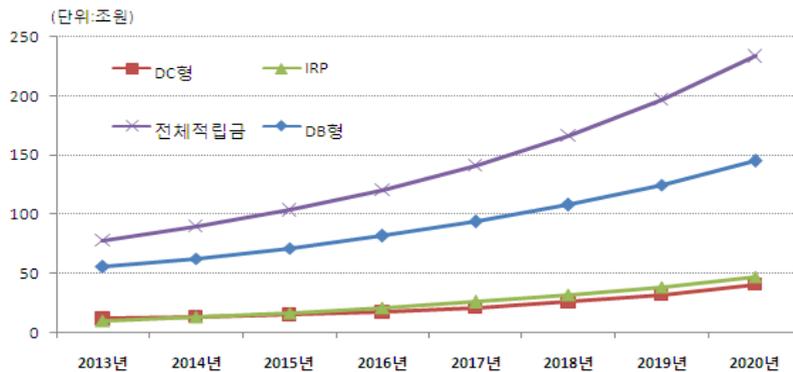
〈표 6-2〉 퇴직연금 적립금 전망

(단위 : 십억원, %)

년도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퇴직연금(IRP)	합계	증가율
2013	55,516	12,101	10,604	78,221	13.8
2014	62,645	13,413	13,708	89,767	14.8
2015	71,376	15,157	17,189	103,723	15.5
2016	81,854	17,449	21,151	120,454	16.1
2017	93,871	21,203	26,135	141,211	17.2
2018	108,128	26,111	32,017	166,257	17.7
2019	124,964	32,512	39,048	196,524	18.2
2020	144,930	40,980	47,687	233,598	18.9

퇴직연금 적립금은 2013년 79조원에서 2015년 104조원, 2020년에는 약 234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현재와 비교해 약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8년간 제도별 비중변화를 살펴보면, DB형의 비중은 2013년 약 71%에서 2020년에는 9%p 감소한 62%로 예상되며, DC형의 비중은 2013년 약 16%에서 2020년에는 1.5%p 증가한 17.5%로 예상된다. 개정근로법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IRP의 비중은 2013년 약 13%에서 2020년에는 7.4%p 상승한 20.4%로 전망된다.



[그림 6-5] 2013~2020년 퇴직연금 적립금 향후 추이

제3절 개인연금 향후 전망

노후소득보장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된 지 20년이 경과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개인연금제도는 세제혜택의 내용에 따라 크게 세제적격형 연금과 세제비적격형연금으로 구분되는데 연금저축은 세제적격형연금, 일반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형연금에 해당된다(윤성주, 2013)⁷⁾. 연금저축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가입 후 10년 이내 중도 해지 시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또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기타소득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징수한다. 반면 일반연금보험의 경우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이자소득세를 징수하며,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혜택이 있다. 연금저축은 운용주체에 따라 크게 은행의 연금저축신탁,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 보험회사의 연금저축보험으로 구분되며, 현재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개인연금의 현황은 <표 6-3>과 같다.

<표 6-3> 개인연금 적립금 추이

(단위: 십억원)

연도	세제적격 연금(A)					세제비적격 연금(B)	개인연금 전체(A+B)
	생보	손보	은행	자산운용	기타		
1994	634	250	1,097	568	-	-	2,548
1995	1,786	699	2,143	1,545	-	-	6,173
1996	3,952	1,309	3,376	2,076	-	-	10,713
1997	5,611	1,751	4,549	1,461	-	-	13,373
1998	6,710	2,045	5,024	1,203	-	-	14,981
1999	6,990	2,152	5,458	1,339	-	-	15,938
2000	9,266	2,779	6,528	1,020	-	-	19,593
2001	10,992	3,272	7,540	1,081	-	24,654	47,539
2002	12,763	3,763	8,406	1,094	-	28,629	54,655
2003	14,050	4,239	9,238	1,071	-	34,377	62,974
2004	15,304	4,616	9,995	1,090	-	40,100	71,105
2005	16,943	5,091	10,604	1,182	-	44,347	78,167
2006	17,722	5,480	11,056	1,271	1,957	49,602	87,088
2007	20,158	6,138	11,238	1,697	2,463	53,139	108,045
2008	22,837	7,057	11,014	2,290	3,080	54,242	117,239
2009	25,927	8,360	10,856	2,924	3,851	83,870	135,788
2010	29,839	10,274	11,320	3,552	4,629	98,380	157,994
2011	33,814	13,074	11,765	3,923	5,583	109,041	177,200

주: 1994~2008년도 자료는 이순재·김현수(2009) 자료를 인용, 2009년도 이후는 금융감독원의 개인연금관련 통계 공시자료를 합쳐 재구성함.

7) 세제적격형연금은 1994년 6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에 의거하여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다. 세제비적격형연금은 일반 연금보험상품으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일반연금(금리확정형·연동형)과 투자형연금인 변액연금 및 자산 연계형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퇴직연금 추정에 이어서 개인연금 적립금의 추이와 향후전망을 예측하고자 한다. 개인연금 시장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다음의 과정을 따른다.

첫째, 패널자료 및 투자자 조사자료, 개인연금 관련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개인연금 가입, 보유 및 월평균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판별한다.

둘째, 이들 영향 변수들 중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등에서 공시하는 데이터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을 선별한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공표하는 개인연금 적립금을 종속변수, 자료 단위차를 보정한 표준화된 계량 영향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변수 선택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개인연금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개인연금의 수요와 관련한 연구는 크게 공급자 측면과 수요자 측면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백은영, 2012). 공급자 측면은 보험사의 판매 성과, 판매전략, 상품개발이 주된 연구들이고, 수요자 측면은 개인연금 보유여부 및 불입액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한 것이 대부분이다(<표 6-4>).

<표 6-4> 개인연금 가입 및 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한 선행연구

연구자(년도)	데이터	영향변수
문숙재, 김연정 (1997)	한국가구패널주소 (대우패널)	가입[가구주연령, 직업, 가계총소득, 주식보유여부], 불입액[가구주연령, 순자산, 예금보유여부]
전승훈 (2006)	한국노동패널 4-7차년도 자료	가입[국민연금 가입, 노후대비 저축목적, 연령, 교육, 저축성 보험 불입액, 취업상태의 변화]
전승훈, 임병인 (2008)	국민노후보장패널	연령, 직종, 노후대비저축목표, 근로소득
송윤아 (2009)	국민노후보장패널	상속동기, 자녀수 기대여명 1년 증가할 경우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 0.1% 증가 자녀수가 1명 증가할 경우 개인연금 가입 가능성 1.1% 감소
주소현 (2011)	2007년 투자자조사자료 투자자보호재단	가입[연령, 결혼상태, 가계소득, 총자산, 저축목표, 은퇴 기간, 저축계획기간, 펀드투자] 불입액[결혼상태, 자영업, 주거형태, 가계소득, 총자산]
백은영 (2012)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가입[연령, 결혼상태, 가계소득, 노후대비수단, 공적연금 가입여부, 교육수준, 직업, 보험상품 가입여부]

선행연구에서 판별된 개인연금 보유 및 월평균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구·사회학적, 재무설계 관점에서 분류하여 살펴보면 개인연금보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연령(낮을수록), 결혼상태(기혼), 월평균소득(고소득), 교육수준(고학력), 금융자산(많을수록), 공적연금(국민·특수직연금) 가입여부, 저축목표, 장수 은퇴기간, 3년 이상의 저축계획기간, 펀드투자여부, 직업(고소득 직종)이다. 월평균불입액의 영향변수는 결혼상태, 직업, 월평균소득, 금융자산, 주거형태, 세제혜택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개인연금 가입과 월평균불입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많았지만 이 가운데 통계청, 고용노동부, 한국은행 등의 공인된 데이터로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들은 월평균소득, 결혼상태, 은퇴기간, 자영업자, 가계저축률, 세제혜택이다. 이와 같은 현실적 제약 요소를 감안해 비적격과 적격 개인연금으로 구분하여 회귀식을 산출하였다.

회귀식

$$\widehat{y}_z = \beta_1 \times \text{이벤트}_z + \beta_2 \times \text{은퇴기간(남)}_z + \beta_3 \times \text{은퇴기간(여)}_z + \beta_4 \times \text{미혼율}_z + \beta_5 \times \text{평균임금}_z + \beta_6 \times \text{가계저축률}_z + \beta_7 \times \text{자영업자수}_z + \varepsilon$$

주: 'z'는 표준화를 의미함

한편 다중공선성을 해결하기 위해 변수선택(단계선택; stepwise)을 적용해 회귀식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다⁸⁾. 회귀분석 결과는 <표 6-5>~<표 6-6>과 같다.

<표 6-5> 비적격 개인연금 회귀분석 결과

구분	일반 회귀분석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변수명	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s.e)
이벤트(세제혜택)	-0.048 (0.421)	-
은퇴기간(남)	0.865 (2.422)	-
은퇴기간(여)	-3.047 (2.914)	-1.376 (0.542)
미혼율	4.119 (3.569)	2.324 (0.870)
평균임금	1.005 (2.190)	-
가계저축률	0.092 (0.072)	-
자영업자수	0.014 (0.207)	-
결정계수	0.983	0.967

주 1: 표준화계수이므로 상수항 없음.

주 2: 이벤트는 2012년 세법개정으로 인해 퇴직연금 추가납입금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을 의미함

8) 변수선택의 방식에는 forward, backward, stepwise가 많이 사용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사적연금적립금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를 먼저 선택한 후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를 선정하는 방법의 forward 방법을 약간 개선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또한 결정계수가 높은 것은 선행연구에서 검증된 영향변수와 변수선택 방법이 적합한 최적 모형 선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변수선택에서 판별된 최종 영향변수는 개인연금 불입액에 모든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변수들 중에서 설명력이 가장 높다는 것을 의미 한다. 즉, 다른 변수의 설명력을 가장 많이 포함한 변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 보다 많은 영향변수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며, 장시간의 패널자료를 활용해 보다 세밀한 변수선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표 6-6〉 적격 개인연금 회귀분석 결과

구 분	일반 회귀분석	단계별 회귀분석(stepwise)
변수명	표준화계수 (s.e)	표준화계수 (s.e)
이벤트(세제혜택)	-0.03 (0.078)	-
은퇴기간(남)	-0.502 (0.448)	-
은퇴기간(여)	-0.93 (0.540)	-0.971 (0.189)
미혼율	2.964 (0.661)	1.949 (0.304)
평균임금	-0.449 (0.406)	-
가계저축률	0.027 (0.013)	-
자영업자수	0.015 (0.038)	-
결정계수	0.999	0.996

앞서 논의된 3단계 개인연금 추정프로세스를 통하여 개인연금 적립금을 도출한 결과는 <표 6-7>과 같다. 2013년에는 231조~242조, 2015년에는 270조~282조 2020년에는 약 431조~447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2012년과 비교했을 때, 2020년에는 1.8배~2.1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 6-7〉 개인연금 적립금 전망

(단위: 십억원)

연도	비적격 개인연금(A)		적격 개인연금(B)		개인연금 적립금(A+B)	
	변수선택 안함	단계선택	변수선택 안함	단계선택	변수선택 안함	단계선택
2012	127,498	128,144	76,015	75,222	203,513	203,366
2013	155,333	147,727	87,642	83,934	242,976	231,661
2014	160,695	155,514	91,862	87,566	252,557	243,080
2015	180,819	174,812	101,477	96,174	282,296	270,986
2016	201,594	194,968	111,472	105,093	313,066	300,061
2017	219,976	214,552	121,058	113,804	341,034	328,356
2018	259,247	246,504	138,236	127,802	397,483	374,307
2019	276,030	266,374	147,246	136,617	423,277	402,992
2020	291,257	286,244	156,009	145,432	447,266	431,677

주: 변수선택 방법에 도출된 개인연금이 다소 보수적인 수치로 나타남.



제4절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 장래 사적연금 적립금 중장기 규모를 추정할 결과 2013년 약 321조원에서 2015년 약 386조원, 2020년에는 약 68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표 6-8>). 이에 반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여전히 절반 정도의 비중⁹⁾을 나타내면서 연금시장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장래 연금시장 지형은 민간부문의 역할이 큰 외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매우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공적부문의 비중이 더 큰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벨기에, 프랑스, 일본, 스웨덴 등 5개국 뿐이며, 우리나라의 연금시장은 향후 10년간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되지만 선진국을 따라 잡기는 요원해 보인다.

<표 6-8> 가계금융자산, GDP 대비 사적연금 비중

(단위: 십억원, %)

년도	GDP	가계 금융자산	퇴직연금			개인연금		
			적립금	GDP 대비 비중(%)	가계금융 자산대비 비중(%)	적립금	GDP 대비 비중(%)	가계금융 자산대비 비중(%)
2013	1,327,421	2,764,218	78,221	5.9	2.8	242,976	18.3	8.8
2014	1,383,571	2,962,505	89,767	6.5	3.0	252,557	18.3	8.5
2015	1,442,096	3,168,704	103,723	7.2	3.3	282,296	19.6	8.9
2016	1,503,097	3,384,011	120,454	8.0	3.6	313,066	20.8	9.3
2017	1,566,678	3,609,439	141,211	9.0	3.9	341,034	21.8	9.4
2018	1,632,949	3,844,877	166,257	10.2	4.3	397,483	24.3	10.3
2019	1,702,022	4,091,448	196,524	11.5	4.8	423,277	24.9	10.3
2020	1,774,018	4,349,864	233,598	13.2	5.4	447,266	25.2	10.3

민간부문의 비중, 즉 사적연금의 비중을 국민연금 이상으로 높이는 길이 인생 100세 시대에 대처하는 현명한 전략이고, 이를 위한 정책 개발과 자원배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재 퇴직금,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퇴직연금의 역사가 짧은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여 생활자금으로 소진하는 경향이 퇴직연금의 성장에 가장 큰

9) 국민연금 공표통계(2013) 및 추정(2013): 2013년 484조원, GDP 대비 36.4%, 가계금융자산대비 17.5%, 2020년 924조원, GDP 대비 52.1%, 가계금융자산대비 21.2%.

결립들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산 축적을 강화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으로 단일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10년으로 되어 있는 개인연금의 세제혜택 조건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개인연금이 가교연금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정년이 53.5세를 감안할 때 국민연금의 수령연령은 점차 늦춰지고 있으므로 최대 약 12년에 달하는 소득공백기가 생길 수 있다. 물론 국민연금의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여 소득공백기를 어느 정도 메울 수 있으나, 수급연도 1년에 7%의 감액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소득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높아지는 고령기에 심각한 소득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끝으로, 사적 은퇴자산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는 금융회사 역시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고객의 평안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후가 불안하다고 공포마케팅으로 고객을 위협하는 자세보다는 고객에게 희망과 비전을 심어주고 노후 걱정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고객의 상황에 적합한 콘텐츠와 솔루션을 개발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고용노동부(2010), 「퇴직연금으로의 퇴직급여제도 단일화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 고용노동부(2013), 「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제도의 향후과제」, 연구보고서.
- 문숙재, 김연정(1997), “가계의 개인연금 보유여부와 불입액의 영향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5호, pp.265~277.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0), 「기업의 퇴직연금 인식 및 운영실태 분석」, 서베이 보고서 No.3.
-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2012), 「2011년 근로자의 퇴직연금에 대한 인식 실태조사」, 서베이 보고서 No.4.
- 백은영(2012), “개인연금 가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사회보장연구」, 제28권 제3호, pp.63~86.
- 신세라(2009), “2020년 한국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향후과제”, 「스페셜레포트 No.3」,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 오진호 외 3인(2013), “중장기(2011~2020) 은퇴자산 추정 및 시사점”, 「스페셜레포트 No.9」, 미래에셋퇴직연금연구소.
- 윤성주(2013), “개인연금 세제혜택에 대한 소고”,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13년 1월호, pp.6~22.
- 이순재, 김현수(2009), “개인연금의 현황과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개선방향”, 「사회보장연구」, 제25권 제3호. pp.249~280.
- 전승훈, 임병인, 강성호(2006), “개인연금 가입결정 및 가입상태 변화분석”, 「보험개발연구」, 제17권 제1호, pp.137~168.
- 전승훈, 임병인(2008), “국민연금자산이 개인연금자산 보유행위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시사점”, 「보험개발연구」, 제19권 제3호, pp.83~117.
- 주소현(2011), “개인연금 보유 및 연금불입액의 관련요인 분석: 상속동기를 포함하여”, 「소비자학연구」, 제22권 제3호, pp.183~206.
- OECD(2011), 「Pension at a Glance 2011: Retirement-income system in OECD and G20 Countries」.